본 브로셔는 뉴욕주 아동가족 심의회(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, CCF)의 Hard to Place/ Hard to Serve 부서가 어린이와 청소년, 그리고 그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 것입니다.

Q&A Hard to Place 상황과 Hard to Serve 상황의 차이는 무엇입니까?

*Hard to Place*는 여러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나 청소년이 임시 보호소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지만 그 가족과 담당 기관이 성실한 노력을 했음에도 적절한 보호소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
*Hard to Serve*는 여러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나 청소년이 여러 지원자의 적절한 서비스의 도움으로 자택에 머물 수 있지만 그 가족과 지역 기관이 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
Q&A Hard to Place/Hard to Serve 부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?

Hard to Place/Hard to Serve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습니다.

- 개인이 가장 적절한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또는 거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.
- 서비스 또는 거주지 알선 시 지연 최소화.
- 시기 적절한 서비스 제공 또는 거주지 알선을 방해하는 장애물 해결.

Q&A Hard to Place/Hard to Serve 부서는 언제 개입합니까?

Hard to Place/Hard to Serve 부서는 해당 지역 차원에서 모든 프로그램 옵션과 분쟁 해결 절차를 이미 소진한 후에, 또는 부모/친인척이 아동에게 필요한 사항이 기존 시스템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개입합니다.

Q&A Hard to Place/Hard to Serve 부서에 개인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

다음을 포함한 누구든 Hard to Place/Hard to Serve 유닛에 해결 방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.

- **개인(자체 의뢰)**
- **부모 또는 친인척**
- **가정 법원 판사**
- **학구**
- **지역 사회복지부**
- **주 담당 기관 및 지방 사무소**
- **자원 봉사(비영리) 단체**
- **후원자**

Q&A Hard to Place/Hard to Serve 부서에 의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?

의뢰자는 Hard to Place/Hard to Serve 부서에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.

CCF 정보 수집 및 CCF 정보 공개 양식. 이 양식은 www.ccf.ny.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

추가로 다음 사항도 제공하십시오.

- *의료 기록*
- *심리적 평가*
- *정신적 평가 및 기능적 평가*
- *심리 사회적 병력*
- *개별 교육 프로그램(Individual Education Program, IEP)*
- *법정 소송(있는 경우)*
- *거주지 지원 이력*

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, 관리됩니다.

www.ccf.ny.gov

뉴욕주 아동가족 심의회(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) Hard to Place/Hard to Serve 부서에 의뢰하려면 CCF 정보 공개 양식, CCF 정보 수집 양식, 관련 자료를 아래로 보내 주십시오.

Hard to Place/Hard to Serve Unit
NYS 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
52 Washington Street
West Building, Suite 99
Rensselaer, New York 12144

팩스: 518-473-2570

문의 사항이 있으십니까?

아래로 전화 주십시오.

Sheila Jackson, Hard to Place/Hard to Serve 부서 조정관
전화번호: (518) 402-3284
Sheila.Jackson@ccf.ny.gov

-또는-

Kathleen Rivers, Hard to Place/Hard to Serve 부서 부조정관
전화번호: (518) 473-9032
Kathleen.Rivers@ccf.ny.gov

뉴욕주 아동가족 심의회(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) Hard to Place/Hard to Serve 부서는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시스템 프로그램(Children and Adolescent Service System Program, CASSP)의 핵심 원칙에 따라 활동합니다. 아동 중심(Child-centered), 가족 중심(Family-focused), 지역 사회 기반(Community-based), 복합 시스템(Multi-system), 문화적 적절성(Culturally competent), 최소한의 제한(Least restrictive)/최소한의 침범(Least Intrusive).

일반 정보

뉴욕주 아동가족 심의회(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)는 행정부(Executive Department) 내부에 설립되어 시스템을 망라하여 아동과 청소년, 그리고 그 가족에게 보다 적합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출범 당시부터 이 심의회의 일차 목표 중 하나는 여러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다양한 시스템의 서비스가 주는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심의회는 이 목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
1) **개인 아동, 청소년, 가족에게 지원을 제공**
2) **주 정책에 필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촉진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**

www.ccf.ny.gov

Hard to Place/ Hard to Serve 부서의 역할:

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시스템을 망라하여 평가

뉴욕주 아동가족 심의회
(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)
www.ccf.ny.gov

Vanessa Threatte
행정 책임자

Kathy Hochul
주지사